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03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예지·정성국·김상욱

고동진 • 박덕흠 • 김소희

신성범 · 김대식 · 서천호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양질의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의사회화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정 외에 공동 생활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새로운 돌봄수요가 생겨 나면서 소규모 급식 제공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급식관리 체계는 시설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급식 안 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위생 및 영양 관리 기준이나 지원 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에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급식의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식정책의 통합·조정 및 급식관리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을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수준과 식생활이 개선되도록 급식제공시설의 종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 안전관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

준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 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급식의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식정책의 통합·조정 및 급식관리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급식"이란 가정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다수 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 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을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수준과 식생활이 개선되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급식제공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급식의 위생과 영양 등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급식안전관

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등 급식안전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시행에 참여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 가 있다.
 - ③ 급식제공시설의 장, 종사자 및 식품공급자 등 급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급식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는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급식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 2. 급식안전관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3. 급식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4. 급식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기반조성
- 5. 급식안전관리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 6. 급식제공시설의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 7. 급식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 8. 급식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 9. 그 밖에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급식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 전관리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안전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안전관리 정책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 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급식제공시설 등의 관리

제9조(급식안전관리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 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 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하 "급식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제공시설 등에 출입하여 급식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지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제공시설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목적·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급식제공시설(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그 운 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1. 기숙사
 -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3. 병원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5. 산업체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3.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 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9.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제1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한다.

- 5.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한 급식계획서(이하 "집단급식소 식 단"이라 한다)의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 3.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관리
-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 매 급식마다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따라 조리된 식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며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 3.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을 검수하여 급식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 4. 집단급식소의 식단, 식수인원, 위생상태 점검현황 등이 포함된 집 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 관할 것
-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자 ·내용·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할 것
- 제13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 4.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 안전 실무
-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 「식품위생법」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 3.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등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
- 제14조(영양사·조리사 교육) 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1년마다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급식안전관리 지원 등

- 제16조(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급식제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도 및 교육
 - 2. 급식제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 3.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급식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 ③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총괄
 - 2.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3.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 4. 급식제공시설 유형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 5.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6. 제19조에 따른 급식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급식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 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③ 국가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 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 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급식에 관한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이하"급식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정보 등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보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역량강화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사자의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이하"역량강화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역량강화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맞춤형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제공시설의 장 등의 신청을 받아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이하 "맞춤형지 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맞춤형 지원의 신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 실태조사의 실시
- 3.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있다.
 -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 2. 제20조에 따른 역량강화지원
 - 3. 제21조에 따른 맞춤형지원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국가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수수료)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장 벌칙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식품위생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자
 -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또 는 제9조의3을 위반한 자
 -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27조(벌칙)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벌칙)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무를 허위로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자
 -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을 위반한 자
-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을 위 반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의 시설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식품위생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영양사·조리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양사와 조리사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 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로"를 "급식관리지원센터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제56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88조제3항"을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집단급식소"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조리사 등"을 "조리사"로 한다.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 士)를 두어야 한다.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제75조제1항제16호 중 "제51조제1항"을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88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을 "경우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제56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85조제1호 및 제8호 중 "제88조"를 각각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집단급식소에서"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3항제7호 중 "집단급식소"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88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 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조"로 한다.

제9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7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한 자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 중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경우"로,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7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9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6호 중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4조제1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제22조를 삭제한다.